2022.03.31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

유 원 대 학 교

※학과구조 조정에 따라 모집단위 및 인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주요사항

1.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전형유형											
					정원 수시	!내		정시			정원외			
캠	- 715101	입학						수능		특성화	기초생활수 급자·차상	자네이		-
퍼스	모집단위	정원	0.01		ŀ생부교:		-101	위주	농어촌	고교	급사·사성 위계층·	등	만학도	계
			유원 교과	유원 면접	특기자	지역 인재	지역 인재	일반	학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전형	전형	(검도)	I	п	학생			시원내경자			
	경찰·소방행정학부	45		44				1					0	
	사회복지학부	57	11	45				1				3	0	
	호텔외식조리학과	30	8	21				1					0	
	스포츠학부	50		46	3			1					0	
	와인사이언스학과	20		19				1					0	
1 8 1	보건행정학과	25		24				1					0	
동	유아교육과	20		19				1	2				0	
	초등특수교육과	30	29					1					0	
	중등특수교육과	30		29				1					0	
	★간호학과	60		35		8	2	15	6	6	6			
	치위생학과	30	6	23				1	3	2	3			
	물리치료학과	30		25		4		1	3	3	3			
	스마트IT학과	25	24					1					0	
	드론응용학과	25	6	18				1	1				0	
	정보통신보안학과	25	12	12				1					0	
	자동차소프트웨어학과	25	24					1					0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	25	24					1					0	
아	★뷰티케어학과	70		69				1	1				0	
산	미디어콘텐츠학과	25		24				1	1				0	
	호텔항공서비스학과	30		29				1					0	
	문화복지융합학과	63		62				1					0	
	경찰학부	60		59				1					0	
	작업치료학과	50	49					1	3	2	3			
	산업안전보건학과	25	5	19				1					0	
	계	875	198	622	3	12	2	38	20	13	15	3	50	0

[※] 학과 및 모집인원은 구조조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은 교직과정 개설 학과

[※] O은 미지정 학과로 해당전형(만학도) 모집인원만큼 모집 가능

2. 수시모집

1) 모집 일정

구 분	내 용					
원서접수	2023. 09. 11.(월) ~ 15.(금) 중 3일 이상					
전형기간	2023. 09. 16.(토) ~ 12. 14.(목) (90일)					
합격자 발표	2023. 12. 15.(금) 까지					
합격자 등록	2023. 12. 18(월) ~ 21.(목)(4일)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2023. 12. 28.(목) (합격자 발표 18시까지)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수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2023. 12. 29.(금)					

2) 전형유형별 전형요소

전형유형		최저	М НГНГН	전형요소 반영비율						
(학생부	모집단위	학력	선발방법		학생부			면접		~ 고
위주(교과))		기준	및 비율	비율	최고	최저	비율	최고	최저	총점
유원교과전형	전 모집단위	없음	일괄합산 (100%)	100	1,000	680	_	_	_	1,000
유원면접전형	전 모집단위	없음	일괄합산 (100%)	60	600	120	40	400	80	1,000
특기자(검도)	스포츠학부	없음	일괄합산 (100%)	60	600	120	40	400	80	1,000
지역인재 I	간호학과,물리치료학과	없음	일괄합산 (100%)	60	600	120	40	400	80	1,000
지역인재 ॥	간호학과	없음	일괄합산 (100%)	60	600	120	40	400	80	1,000
농어촌학생 (정원외)	전 모집단위	없음	일괄합산 (100%)	60	600	120	40	400	80	1,000
특성화고교 졸업자 (정원외)	전 모집단위	없음	일괄합산 (100%)	60	600	120	40	400	80	1,00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정원외)	전 모집단위	없음	일괄합산 (100%)	60	600	120	40	400	80	1,000
장애인등대상자 (정원외)	전 모집단위	없음	일괄합산 (100%)	60	600	120	40	400	80	1,000
만학도 (정원외)	전 모집단위	없음	일괄합산 (100%)	60	600	120	40	400	80	1,000

3) 학생부 전형유형별 전형요소

전형유형	모집단위	적용대상 고교 졸업년도	학년별 반영비율(%) 전학년 공통비율	학생부 요소별 반영비율(100%) 교과성적
유원교과전형	전 모집단위	전학년도	100	100
유원면접전형	전 모집단위	전학년도	100	100
특기자(검도)	스포츠학부	전학년도	100	100
지역인재 I	간호학과,물리치료학과	전학년도	100	100
지역인재 ॥	간호학과	전학년도	100	100
농어촌학생 (정원외)	전 모집단위	전학년도	100	100
특성화고교 졸업자 (정원외)	전 모집단위	전학년도	100	10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정원외)	전 모집단위	전학년도	100	100
장애인등대상자 (정원외)	전 모집단위	전학년도	100	100
만학도 (정원외)	전 모집단위	전학년도	100	100

4) 학생부 교과성적 반영방법

전형유형	모집단위	반영교과	반영요소
유원교과전형	전 모집단위	교과명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인 과목 중 학년 구분 없이 석차등급이 산출되는 상위등급 9과목 반영	석차등급
유원면접전형	전 모집단위	교과명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인 과목 중 학년 구분 없이 석차등급이 산출되는 상위등급 9과목 반영	석차등급
특기자(검도)	스포츠학부	교과명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인 과목 중 학년 구분 없이 석차등급이 산출되는 상위등급 9과목 반영	석차등급
지역인재 I	간호학과,물리치료학과	교과명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인 과목 중 학년 구분 없이 석차등급이 산출되는 상위등급 9과목 반영	석차등급
지역인재 ॥	간호학과	교과명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인 과목 중 학년 구분 없이 석차등급이 산출되는 상위등급 9과목 반영	석차등급
농어촌학생 (정원외)	전 모집단위	교과명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인 과목 중 학년 구분 없이 석차등급이 산출되는 상위등급 9과목 반영	석차등급
특성화고교 졸업자 (정원외)	전 모집단위	교과명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인 과목 중 학년 구분 없이 석차등급이 산출되는 상위등급 9과목 반영	석차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정원외)	전 모집단위	교과명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인 과목 중 학년 구분 없이 석차등급이 산출되는 상위등급 9과목 반영	석차등급
장애인등대상자 (정원외)	전 모집단위	교과명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인 과목 중 학년 구분 없이 석차등급이 산출되는 상위등급 9과목 반영	석차등급
만학도 (정원외)	전 모집단위	교과명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인 과목 중 학년 구분 없이 석차등급이 산출되는 상위등급 9과목 반영	석차등급

※ 단, 진로선택과목은 등급변환점수표에 따라 변환 후 반영한다.

5) 학생부 없는자 교과성적 반영방법

전형유형	전형대상	반영방법
	1.검정고시출신자	1.학생부 비교내신(석차등급에 의한 환산기준점수표)적용
유원교과전형	2.외국의고등학교과정이수자	2.학생부 비교내신(석차등급에 의한 환산기준점수표)적용
	3.기타	3.학생부 비교내신(석차등급에 의한 환산기준점수표)적용
	1.검정고시출신자	1.학생부 비교내신(석차등급에 의한 환산기준점수표)적용
유원면접전형	2.외국의고등학교과정이수자	2.학생부 비교내신(석차등급에 의한 환산기준점수표)적용
	3.기타	3.학생부 비교내신(석차등급에 의한 환산기준점수표)적용
■コエ/カに\	1.검정고시출신자	HIG OF ST
특기자(검도)	2.외국의고등학교과정이수자	반영안함
지역인재 I	1.검정고시출신자	반영안함
지극한제 1	2.외국의고등학교과정이수자	5528
지역인재 II	1.검정고시출신자	반영안함
지국원제 11	2.외국의고등학교과정이수자	5528
농어촌학생	1.검정고시출신자	반영안함
(정원외)	2.외국의고등학교과정이수자	5528
특성화고교 졸업자	1.검정고시출신자	반영안함
(정원외)	2.외국의고등학교과정이수자	2028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검정고시출신자	1.학생부 비교내신(석차등급에 의한 환산기준점수표)적용
한부모가족	2.외국의고등학교과정이수자	2.학생부 비교내신(석차등급에 의한 환산기준점수표)적용
지원대상자	3.기타	3.학생부 비교내신(석차등급에 의한 환산기준점수표)적용
(정원외)		
 장애인등대상자	1.검정고시출신자	1.학생부 비교내신(석차등급에 의한 환산기준점수표)적용
(정원외)	2.외국의고등학교과정이수자	2.학생부 비교내신(석차등급에 의한 환산기준점수표)적용
(32=.,	3.기타	3.학생부 비교내신(석차등급에 의한 환산기준점수표)적용
만학도	1.검정고시출신자	1.학생부 비교내신(석차등급에 의한 환산기준점수표)적용
[전역모 (정원외)	2.외국의고등학교과정이수자	2.학생부 비교내신(석차등급에 의한 환산기준점수표)적용
(004)	3.기타	3.학생부 비교내신(석차등급에 의한 환산기준점수표)적용

6) 면접

전형유형	모집단위	면접방법	면접기준
유원면접전형	전 모집단위	다대다 구술면접	인성(도덕성,사회성), 가치관 및 자아관, 학구적 태도 및 적성,
ਜਦੋਹਬਹਿਤ	선 포압인기	다내다 구골한답	기초평가 등 종합적으로 평가
농어촌학생	전 모집단위	다대다 구술면접	인성(도덕성,사회성), 가치관 및 자아관, 학구적 태도 및 적성,
0 41 = 10	7 7 8 2 7		기초평가 등 종합적으로 평가
지역인재 1	간호학과,물리치료학과	 다대다 구술면접	인성(도덕성,사회성), 가치관 및 자아관, 학구적 태도 및 적성,
N 7 C M 1	근모ㄱ피,ㄹ디지ㅍㄱ피		기초평가 등 종합적으로 평가
지역인재 11	가호학과 -	 다대다 구술면접	인성(도덕성,사회성), 가치관 및 자아관, 학구적 태도 및 적성,
N - CM II	1 1 1		기초평가 등 종합적으로 평가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 모집단위	다대다 구술면접	인성(도덕성,사회성), 가치관 및 자아관, 학구적 태도 및 적성,
(정원외)	T 1	디데디 푸놀란ㅂ	기초평가 등 종합적으로 평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셔/드던션 사람선 시키가 이 지어가 참그져 때트 미 저서
한부모가족	전 모집단위	다대다 구술면접	인성(도덕성,사회성), 가치관 및 자아관, 학구적 태도 및 적성,
지원대상자			기초평가 등 종합적으로 평가
(정원외)			
장애인등대상자	דו הדונוטו		인성(도덕성,사회성), 가치관 및 자아관, 학구적 태도 및 적성,
(정원외)	전 모집단위	다대다 구술면접	기초평가 등 종합적으로 평가
만학도	א הארוט	디데디 그스며져	인성(도덕성,사회성), 가치관 및 자아관, 학구적 태도 및 적성,
(정원외)	전 모집단위	다대다 구술면접 	기초평가 등 종합적으로 평가

7) 정원내 전형유형별 지원자격

전형유형	모집단위	지원자격 및 기타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유원교과전형	전 모집단위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유원면접전형	전 모집단위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세계/전국검도대회 개인 8강 이내 입상 또는 단체 8강이내 입상자
특기자(검도)	스포츠학부	(단,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불가)
		2. 학년별 수업일수의 70%이상 출석 필수.(1학년/2학년/3학년 1학기)
	간호학과,	1.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역인재 I	근포국의, 물리치료학과	(단, 재학 기준은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크디지묘국피	2. 검정고시출신자 지원불가
		1.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단, 재학 기준은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2. 아래에 해당하는 자
지역인재 II	/ 가호학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시크린제 Ⅱ	[건모락피	제2호(수급자) 및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29조 제2항 제14호 '라' 목에 해당하는 사람
		3. 검정고시출신자 지원불가

8) 정원외 전형유형별 지원자격

전형유형	지원자격 및 기타
농어촌학생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지원자격 1유형 : 농어촌(도서ㆍ벽지)지역 소재 중ㆍ고등학교에서 6년(중1~고교졸업까지)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6년 동안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부모거주) 2유형 : 농어촌(도서ㆍ벽지)지역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12년(초1~고교졸업까지)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12년 동안 본인이 농어촌(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부모비거주) 3. 농어촌(도서ㆍ벽지)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불가 4. 고등학교(초ㆍ중학교)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ㆍ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고등학교(초ㆍ중학교)재학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을 읍ㆍ면 또는 도서ㆍ벽지 지역으로 인정 5. 농어촌(도서ㆍ벽지)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지역 및 도서ㆍ벽지지역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ㆍ벽지 지역
특성화고교 졸업자	1.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 3.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종합고 포함(산업수요 맞춤형 마이스터고 제외) 4. 출신 학과와 지원학과가 다르더라도 지원학과와 관련된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는 인정함 5. 검정고시 출신자 및 특수목적고, 학력인정고교, 대안교육고교 출신자는 지원불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검정고 시 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및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29조 제2항 제14호 '라' 목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등대상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검정고시 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의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자 (2) 국가유공자로서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뇌성마비 포함)의 장애가 있는 자
만학도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2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은 제외한 다)에 입학하는 만 30세 이상인 사람

3. 정시모집

1) 모집시기

구	분	내 용					
원서	접수	2024. 01. 03(수) ~ 06.(토) 중 3일 이상					
전형기간	가군	2024. 01. 09(화) ~ 16.(화) (8일)					
	다군	2024. 01. 25(목) ~ 02. 01.(목) (8일)					
합격지	· - - - - - -	2024. 02. 06.(월) 까지					
합격지	- 등록	2024. 02. 07(수) ~ 13.(화) (7일)					
정시 미등록 충원	한 합격 통보 마감	2024. 02. 20(화) (합격자 발표 18시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정시 미등록 형	충원 등록 마감	2024. 02. 21.(수)					

2) 전형유형별 전형요소

(1) 정시모집 가군(전형유형별 전형요소)

전형유형			HHHH	전형요소 반영비율							
(학생부	모집단위	학력	선발방법		수능			면접		총점	
위주(교과))		기준	및 비율	비율	최고	최저	비율	최고	최저	52	
일반전형	전 모집단위	없음	일괄합산 (100%)	100	1,000	680	_	_	1	1,000	
농어촌학생 (정원외)	전 모집단위	없음	일괄합산 (100%)	100	1,000	680	-	-	-	1,000	
특성화고교 졸업자 (정원외)	전 모집단위	없음	일괄합산 (100%)	100	1,000	680	-	-	-	1,00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정원외)	전 모집단위	없음	일괄합산 (100%)	100	1,000	680	-	-	-	1,000	
장애인등대상자 (정원외)	전 모집단위	없음	일괄합산 (100%)	100	1,000	680	_	_	-	1,000	

(2) 정시모집 다군(전형유형별 전형요소)

전형유형		최저			최저 전형요소 반영비율					
(학생부	모집단위	학력			수능			면접		
위주(교과))		기준	및 비율	비율	최고	최저	비율	최고	최저	총점
일반전형	전 모집단위	없음	일괄합산 (100%)	100	1,000	680	-	-	-	1,000
농어촌학생 (정원외)	전 모집단위	없음	일괄합산 (100%)	100	1,000	680	-	-	-	1,000
특성화고교 졸업자 (정원외)	전 모집단위	없음	일괄합산 (100%)	100	1,000	680	-	-	-	1,00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정원외)	전 모집단위	없음	일괄합산 (100%)	100	1,000	680	-	-	-	1,000

3)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수능영역별 반영비율(100%)					탐구영역
전형유형	모집단위	수능성적 활용지표	반영 영역수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사/과/직)	한국사	반영 과목수
일반학생	전 모집단위	백분위	2 (선택)	(50)	(50)	(50)	(50)	반영 안함	1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백분위	3 (2개 영역 선택 /영어 필수 반영)	(35)	(35)	(30)	(35)	반영 안함	1
농어촌 학생 (정원외)	전 모집단위	백분위	2 (선택)	(50)	(50)	(50)	(50)	반영 안함	1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백분위	3 (2개 영역 선택 /영어 필수 반영)	(35)	(35)	(30)	(35)	반영 안함	1
특성화고교 졸업자 (정원외)	전 모집단위	백분위	2 (선택)	(50)	(50)	(50)	(50)	반영 안함	1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백분위	3 (2개 영역 선택 /영어 필수 반영)	(35)	(35)	(30)	(35)	반영 안함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정원외)	전 모집단위	백분위	2 (선택)	(50)	(50)	(50)	(50)	반영 안함	1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백분위	3 (2개 영역 선택 /영어 필수 반영)	(35)	(35)	(30)	(35)	반영 안함	1
장애인등대상자 (정원외)	전 모집단위	백분위	2 (선택)	(50)	(50)	(50)	(50)	반영 안함	1

4) 정원내 전형유형별 지원자격

전형유형	모집단위	지원자격 및 기타
일반학생	전 모집단위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5) 정원외 전형유형별 지원자격

전형유형	지원자격 및 기타
농어촌학생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지원자격
	1유형 : 농어촌(도서·벽지)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6년(중1~고교졸업까지)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로서 6년 동안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부모거주)
	2유형 : 농어촌(도서·벽지)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12년(초1~고교졸업까지)을 이수하고 졸업(예정)
	한 자로서 12년 동안 본인이 농어촌(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부모비거주)
	3. 농어촌(도서·벽지)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불가
	4. 고등학교(초·중학교)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 지역
	이 해제된 경우에는 고등학교(초·중학교)재학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인정
	5. 농어촌(도서·벽지)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지역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에 의한 도서·벽지 지역
특성화고교	1.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등의고교 졸업자	3.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종합고 포함(산업수요 맞춤형 마이스터고 제외)
들입사	4. 출신 학과와 지원학과가 다르더라도 지원학과와 관련된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는 인정함
	5. 검정고시 출신자 및 특수목적고, 학력인정고교, 대안교육고교 출신자는 지원불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검정고시
	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및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29조 제2항 제14호 '라' 목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등대상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검정고시
	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의해 특
	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자
	(2) 국가유공자로서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뇌성마비 포함)의 장애가 있는 자